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작성·시달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나. 내용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음.

다만,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조례 제56조의 관사 운영경비의 부담 조항에서 보일러 운영 경비의 경우 3급 관사에는 이를 지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 부분도 실제 운영사항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도 생각됨.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관사운영경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3. 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해당)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5조(관사운영경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3. 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병 윤 의원	담민부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질문제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발생 악취에 대한 규제적용 여부		

□ 질문요지

○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규제적용 규정이 있는지 또한 악취정도가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

□ 답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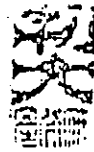
○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생활악취 규제시설중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로서 관리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의 배출시설과 같은 허가·신고등의 사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 악취를 배출하여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 직접관능법에 의한 조사방법에 있어 악취가 2도 그 이하가 되도록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 또는 물청소, 탈취제 살포등 악취제거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악취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저장시설, 선별 및 파쇄공정, 이송공정, 배출·협잡물 저장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탈취탑 계속가동과 물청소, 탈취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토록 하여 악취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와 메탄가스중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인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칼리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등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체에 해로워 기준치를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생활악취시설인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에 있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메탄가스는 1일 1800m³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연소탑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試驗成績書

제 2361 호

受 験 者 姓 名	신진환경기술(주)
受 験 者 住 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36-29
受 験 者 姓 名	박영기
試 験 品 名	마주시 열기실 리비화시실내 악취방지시설
試 験 項 目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기기분석법)
試 験 完 了 時 日	1999. 7. 28.
試 験 完 了 時 日	1999. 7. 30.

依頼하신 試驗結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9 年 7 月 30 日

· 환경영지질 대기,수질,소음측정대행사기관
· 보사부지정 실내공기 측정기관
· 환경부지정 먹는물검사기관

(株) 産業公害研究所長

試 験 成 績

試 験 項 目	배출허용기준	측 量 値		비 고
		INLET	OUTLET	
암모니아 (ppm)	2.0	1.12	0.74	1.20
메틸에르칼란 ppm)	0.0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황화수소 (ppm)	0.06	0.15	0.05	0.06
황화메틸 ppm)	0.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이황화메틸 ppm)	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리메틸아민 ppm)	0.02	1.30	0.015	2
아세트알데히드(ppm)	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스틸렌 (ppm)	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EL 522 - 7345.3 FAX 527 - 8468

원본대조필